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8월 29일

나. 발 의 자 : 송용자, 김낙관, 신문식, 양진오, 이지연(5인)

다. 회부일자 : 2018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9월 4일

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송 용 자 의원

나. 제안이유

- 구미시의 지역 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농업기계의 보급을 촉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미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농업기계 구입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이라도 지역 특화작물 육성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8조)
 - 구성 : 9명 이내 → 11명 이내
 - 위원 : 구미시의회의원 추가 위촉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중 우

○ 본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농업기계 보급을 촉진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